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 구분에 있어서의 윤리적 쟁점: “손실 없음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향연*

요약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주요 논쟁은 줄기세포를 어디서 추출하여 사용할 것인지, 줄기세포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초기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연구는 많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윤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윤리적 논쟁은 초기 배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의 파괴를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의 유용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한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입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배아의 파괴를 수용하는 입장이 있다. 둘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반대함으로써 그 연구가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포기하는 입장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두 입장이 야기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가장 유연한 방법인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 사이의 중간입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간입장을 옹호하는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과 이러한 구분을 정당화하는 “손실 없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이 원리가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이 줄기세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윤리적 지침과 관련 규제 및 정책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색인어

배아줄기세포연구, 생의학 연구, 인간배아, 남은 배아, 만든 배아, 손실 없음의 원리

I. 들어가며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에서 필자의 이목을 끈 것은 줄기세포 치료 의혹과 관련한 뉴스였다.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지원금으로 200억 원을 내놓았고 지난 7월에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조건부로 승인[1]한 바 있다.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침체됐던 줄기세포 연구의 재개를 기대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줄기세포 연구로 난치병 환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와 업계 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권에만 관련돼 있었다는 점은 크게 아쉽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책과 법률제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윤리적 지침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주요 논쟁은 줄기세포를 어디서 추출하여 사용할 것인지, 줄기세포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초기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연구는 많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윤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윤리적 논쟁은 우리가 초기 인간배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근본적인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은 초기 배아가 파괴되는 과정

을 포함한다. 연구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든지간에 인간배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배아에 온전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학 연구가 결국에는 배아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훼손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난치병과 생명의료 연구를 위한 치료를 개발하는 데 큰 희망을 갖게 한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분명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입장을 구분해보면 다음의 두 입장으로 정리 가능하다[2].¹⁾ 첫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배아의 파괴를 수용하는 입장이 있다[3].²⁾ 둘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반대함으로써 그 연구가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포기하는 입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야만 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선택은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무작정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반드시 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학적 측면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특히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고려한다면 그

1) 이러한 입장들은 배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 그리고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전면적 허용입장은 인간배아를 실험재료로만 여기는 자본주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전면적 금지입장은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배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고 이를 연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허용입장은 인간배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보고 이러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인간의 권리를 위해 즉 인간의 치료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배아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2] 참조.

2) 일반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가 “선행의 원칙(The Principle of Beneficence)”인 만큼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허용 가능하다. 비침과 칠드리스는 “선행이란 선을 베푸는 행위를 좀 더 폭넓게 포괄하기 위해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모든 형태의 행위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줄기세포 연구의 목적이 인간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선행의 원칙”을 줄기세포 연구 지지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3] 참고. 다른 근거 중 하나는 본고에서 소개하려는 “손실 없음의 원리(The nothing-is-lost principle)”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것은 마땅히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시각에서는 다른 중요한 측면을 도외시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 또한 크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4,5].³⁾ 그러한 오류는 분명 우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성찰과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초기 배아를 단지 세포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구에서 배아를 파괴하는 사실이 연구를 금지할 만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배아가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바로 여기서 윤리적 딜레마가 생겨난다.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는 가장 유연한 방법은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 사이의 중간입장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배아연구를 지지하면서도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 이러한 중간입장에서 결정적인 생각은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를 구분한다는 것이다[6].⁴⁾ 이 입장에서는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과 같이 불임치료에서 쓰고 남은 배아의 연구는 허용하지만 연구나 치료의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배아의 연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배아 모두에게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남은 배아를 파괴하는 것보다 연구 배아를 파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왜 더 나쁜가? 필자는 이러한 물음들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앞으로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해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의 구분을 지지하는 논증으로 “손실 없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본고에서 이 원리가 과연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남은 배아 vs. 만든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서 배아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은 언제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는 윤리적 딜레마가 뒤따른다. 즉 인류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잠재적 생명인 배아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한 배아연구는 초기의 배아를 파괴한다[7].⁵⁾ 배아에게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바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들은 연구 자체를 문제시한다. 이에 대한 모종의 해결책은 과학의 발전과 인간 삶의 향상을

3) “미끄러운 비탈길”은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이 자체로 연구의 반대 이유로 삼는다면 발전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윤리적·과학적 상생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이클 셸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줄기세포 연구가 착취와 오용으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비탈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반대론이 제기하는 우려는 합당하지만,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것이 그런 우려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의회는 인간 복제 금지와 같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들을 시행하여 그러한 미끄러운 비탈길을 피할 수 있다.” 참고문헌[4] 참고. 이와 유사한 논변으로 “치명적 성향”이 있다. “...도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행동들을 용인한다면, 이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다른 행동들도 용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 쪽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치명적 성향을 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5] 참고.

4) 필자는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은 줄기세포 논쟁에서 새롭지는 않지만 재조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줄기세포 연구의 실질적인 윤리적 토대를 제공할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National Advisory Bioethics Commission의 report인 Ethical Issue in Human Stem Cell Research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필자는 원문에서의 “discarded-created distinction”를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discarded’를 ‘남은 배아’로 번역한 데에는 체외수정으로 쓰고 남은 잉여배아라는 뜻을 살리기 위해 ‘남은 배아’라고 번역하였고 덧붙여 연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든 배아’와 어구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만든 배아’와 ‘연구 배아’는 맥락상 같은 의미임을 밝혀둔다.

5) 현재 줄기세포 연구에서 배아 파괴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유형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법을 강구

위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정당성 확보와 윤리적 측면을 일정 부분 만족시키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배아연구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지배적인 반대 견해 사이의 중간적 윤리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배아 연구를 허용하지만 배아가 상당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 또한 수용한다. 이 입장은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러한 중간입장은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를 구분하고, 그 구분이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the discarded-created distinction). 체외수정(IVF)과 같이 불임치료에서 쓰고 남은 배아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추정적으로 허용가능하다. 그러나 단지 줄기세포연구나 치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불가능하다[8].

이처럼 “남은 배아-만든 배아의 구분”은 배아 생성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배아 연구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배아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생식을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배아 중에서 더 이상 불임치료를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된 배아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배아는 폐기될 수도 있고, 연구 목적을 위한 잠재적 사용 또한 허용 가능하다. 둘째,

출산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도 없이 만들어진 배아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배아는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개발된 것들이거나, 줄기세포 또는 다른 세포주, 복제, DNA 서열 또는 단백질과 같은 연구와 의료용 물질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것들이다[6].

배아 연구의 첫 번째 유형은 불임치료를 위해 체외수정 후에 쓰고 “남은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다. 배아 연구의 두 번째 유형은 연구목적만을 위해 “만든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연구 배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구배아를 사용한 연구의 장점은 남은 배아를 사용한 연구로는 불가능한 치료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연구 배아는 줄기세포연구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특히 체세포핵치환 또는 복제를 통해 만든 배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동일한 줄기세포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은 배아”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은 남은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는 추정적으로 허용하지만 연구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는 허용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배아 모두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의 논리에 따라 “남은 배아”는 파괴해도 좋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불어 이 구분에서 연구 배아를 파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왜 더 나쁜가를 설명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구분이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지침과 관련 규제 및 정책을 제고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구분을 좀 더 면밀

하고 있다. 그러나 “줄기세포는 그자체로 복사된 새로운 세포와 특수화되고 분화된 세포유형으로 분열한다.”[7]는 공통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아줄기세포는 기본적 개념에 비교적 충실한 증식과 분화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줄기세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여전히 줄기세포 연구에서 배아 사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히 분석하고자 한다.

III. “손실 없음의 원리”

이제부터는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을 지지하는 논증을 살펴볼 것이다. 이 구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은 배아의 훼손은 왜 허용되는지, 연구 배아의 훼손은 왜 허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필자는 이 구분을 지지하는 이론적 바탕은 공리주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담은 대표적인 논증은 “손실 없음의 원리(the nothing-is-lost principle)[9]”⁶⁾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남은 배아”가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 배아는 더 이상 생식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배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를 추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어차피 죽게 될 “남은 배아”를 연구에 활용하여 유용함을 남긴다면 어떻게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아웃카(Outka) [9]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배아의 상당수는 계속적으로 폐기되거나 냉동되어 왔다. 그들은 어쨌든 착상되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것들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잃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9].

아웃카의 주장처럼 “남은 배아”는 불임시술에 사용되지 않으면 어쨌든 폐기되거나 버려질 것들이다. 이 배아를 연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면 “남은 배아”에 대한 연구는 허용 가능하다.⁷⁾ 이러한 논증에 따르면 “남은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논증을 디볼더(Devolder) [8]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손실 없음의 원리(the nothing-is-lost principle).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손실은 허용되지 않지만, (1) 그 손실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발생하는 것이고 (2) 그러한 특정 손실의 발생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 고의적으로 손실을 야기하는 것은 추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8].

이러한 원리를 통해 남은 배아 파괴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를 통해 얻는 유용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용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 배아의 파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비난을 최소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원리가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의 구분을 지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남은 배아 파괴라는 행위가 “손실 없음의 원리”를 통해 허용된다면 이 “손실 없음의 원리”는 보다 정교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을 지지하기 위한 원리로서도 손색이 없어야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

6) “손실 없음의 원리(the nothing-is-lost principle)”는 아웃카의 논문에서 소개되었고 아웃카는 Paul Ramsey에게 이 원리를 처음 배웠다고 말한다. Ramsey에 따르면 “무고한 생명에 대한 고의적인 죽음과 같은 살인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금지하였지만, 두 가지 면제 조건을 붙이고자 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될 때 우리는 직접적 살인을 허용할 수 있다.: 1) 무고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죽을 것이고, 2) 이로써 다른 무고한 생명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조건은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규정한다.”참고문헌[9] 재인용. 필자는 “The nothing-is-lost principle”가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점에서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손실 없음의 원리’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 그러나 “손실 없음의 원리”에 따라 여기서 연구 배아의 파괴는 여전히 허용될 수 없다.

다 명확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IV. “손실 없음의 원리”에 따른 남은 배아 연구의 정당성

이에 “손실 없음의 원리”가 남은 배아 파괴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자. 이 원리가 남은 배아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배아 논쟁에서 흔히 말하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염두에 두면 일반적으로 배아 연구는 허용 불가능할 것이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한 주장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부분 배아가 상당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논증들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에 반대되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손실 없음의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디볼더의 다음 사례에 대입하여 숙고해보자.⁸⁾

팀과 인디언. 팀은 20명의 인디언들이 있는 남아프리카 도시에 도착했다. 이 인디언들은 육군대장의 명령 아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 육군대장은 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팀이 인디언 중 한 사람인 미카를 죽이면 다른 인디언들은 풀어줄 것이다.” 팀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육군대장은 팀이 도착하지 않아도 군인들은 미카를 포함한 20명의 인디언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것이다. 팀은 총으로 육군대장과 군인들을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생각해보지만 안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시도하면 모든 인디언과 자신 또한 죽게 될 것이다[8].

이것을 “손실 없음의 원리”에 대입하여 보면 손실인 미카의 죽음과 인디언 전체의 죽음은 어떤 경우라도 발생할 것이고 팀이 미카를 죽여 나머지 인디언들을 구하는 좋은 무언가는 팀의 선택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리에 따르면 팀이 미카를 죽이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을 남은 배아 파괴에 대입해보면 남은 배아 파괴도 허용될 수 있다. “손실 없음의 원리”가 살인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남은 배아를 죽이는 문제’ 또한 정당화할 수 있다.

이처럼 “남은 배아-만든 배아의 구분”을 지지하는 논증은 아웃카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고한 생명에 속하기는 하나, 영원히 버려지거나 냉동될 가능성이 있는 어쨌든 결국에는 죽을 불임클리닉의 배아로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인 알츠하이머, 파킨슨 및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옳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9].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봤을 때, 배아 연구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남은 배아 죽이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체외수정으로 남은 배아가 반드시 죽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체외 수정을 위해 생성된 냉동 배아의 경우에는 출산을 원하는 불임 부부에게 기증되어 출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브록(Brock) [10] 역시 이를 지적한다. 그는 “손실 없음의 원리”에서 ‘어떤 경우라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남은 배아가 반드시 죽는다는 명제가 달라진다고

8) 디볼더는 Bernard A.O. Williams의 “A Critique of Utilitarianism”에 나온 이야기를 차용하여 수정하였다.

지적한다. 브룩은 “손실 없음의 원리”를 “포괄적 범위(strong version)”⁹⁾와 “특정한 범위(weaker version)”¹⁰⁾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포괄적 범위”의 설명은 어떤 경우에 누구라도 손실을 발생시킬 것(what anyone could do) [8]이라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손실 없음의 원리”의 “포괄적 범위”의 설명이 남은 배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남은 배아는 비록 냉동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10]. 더욱이 남은 배아는 냉동상태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기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범위”의 설명은 배아는 누군가에 의해 살아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한다.

이어서 브룩은 “특정한 범위”의 또 다른 설명을 정리한다. 그의 “특정한 범위”의 설명은 남은 배아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서) 즉 그 남은 배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실제로 불임 치료에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느냐에 따른 손실의 문제가 드러난다[10]. 만약 연구자가 남은 배아를 기증받았고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를 수행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연구를 기증받은 배아는 해동되어 불임치료를 사용되어 죽거나 보관 기간 만료로 폐기될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손실은 연구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아니다. 이처럼 남은 배아가 실제로 죽게 될 것이라면 남은 배아로 배아 연구를 하는 것에서의 손실은 사실상 없다.

“손실 없음의 원리가”가 남은 배아의 훼손을 이와 같이 정당화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브룩은 설명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버려진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연구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어쨌든 그 아기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려진 아기를 위한 대안은 물론 아이가 죽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다. …손실 없음의 원리에 대한 “특정한 범위(weaker version)”의 설명을 확실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간 배아줄기세포(hESC) 연구에서 여분의 배아를 파괴하는 대신에 배아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냉동하거나 착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배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10].

따라서 브룩은 “손실 없음의 원리”의 “특정한 범위”의 설명은 남은 배아 죽이기는 정당화할 수 있어도, 여전히 배아의 훼손을 지지할만한 도덕적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10]. 더불어 또한 브룩의 “특정한 범위”에 관한 설명에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브룩의 “특정한 범위”에 관한 설명에서는 도덕적 숙고를 함으로써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연구자를 가정하고 있다. 단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손실의 문제를 제3자들의 행위에서 따지고 있다. 그러면서 배아 연구에서 연구자는 배아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 배아는 불임치료를 통해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가정한다.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이는 연구자는 손실에 대해서는 왜 방관적인 입

9) 브룩의 글 내에서 “strong version”의 설명이 사실상 표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누구에 의해서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이를 넓은 의미의 ‘포괄적 범위’라고 번역하였다.

10) 브룩의 글 내에서 “weaker version”의 설명이 사실상 표현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손실될 운명의 배아, 즉 연구 수행의 유무와 상관없이도 다른 사람에 의해 배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이를 ‘특정한 범위’라고 번역하였다.

장이어야 하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손실과 관련하여 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특정 행위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가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듯 브록의 “특정한 범위”의 설명은 손실을 발생시키는 주체와 관련해 연구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포괄적 범위”의 설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미래 행위까지 포함했지만, “특정한 범위”의 설명은 연구 당사자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행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제 3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생긴다[8].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볼더는 “포괄적 범위”의 설명과 “특정한 범위”의 설명을 결합한 “혼합된 설명(mixed version of the Nothing-is-Lost principle)”을 제시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행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설명이다.

손실 없음 원리의 혼합된 설명(혼합된 손실 없음의 원리). (1) 손실은 행위 당사자의 행위 여부와(합리적인 선택 사이에서) 상관없이, 제 3자들의 실제 행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2) 일반적으로는 고의적인 손실의 발생을 허용치 않지만, 그 손실의 발생으로부터 좋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고의적인 손실은 추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8].

“혼합된 설명”에서 손실은 ‘행위자’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발생하고 이는 제 3자의 실제 행위로 부터 발생하는 손실도 모두를 포함한다. 즉 당

사자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포괄적 범위”의 설명에서 손실은 ‘누구나’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발생한다. 그리고 “손실 없음의 원리”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행위자와 관련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행위자라도 덕적 숙고를 할 경우 더 이상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다시 돌아가 “혼합된 설명”을 배아 연구에 적용하면 (1) 연구자 외의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가 무엇을 하는지(합리적인 선택들 사이에서)와 관계없이 배아는 곧 죽을 것이고 (2) 배아를 파괴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연구자가 배아를 파괴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허용함을 의미한다[8]. 남은 배아는 어쨌든 죽을 것이고, 더욱이 연구자가 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실험은 분명 해볼 만한 것이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11].¹¹⁾

과연 배아는 연구자의 행위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되어 단순히 죽을 운명으로만 간주되어야 하는가? 연구자는 배아를 냉동하여 살아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생식의 목적을 위해 불임 부부에게 기증을 할 수도 있다. 연구자에게 쉬운 선택은 아마도 배아를 냉동해두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배아의 생명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배아를 냉동시키는 것이 과연 관련된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손실 없음의 원리”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즉 어쨌든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된 손실이 어떤 것인지 또한 짚어볼 중요한 문제

11) 여기서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보다는 윤리와 과학이 상생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올바른 지침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샌델 또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연구용 복제를 허용하되, 규제를 통해 인간 생명 초기의 신비에 적절한 도덕적 제한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참고문헌[11] 참고.

다. 지금까지의 논의대로라면 손실 그 자체는 배아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관련된 손실은 생명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도덕적 지위를 가진 배아의 “가치 있는 삶 (valuable life)”[8,12]¹²⁾에 대한 손실일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디볼더가 말하듯이 가치를 가진 생명에 대한 손실이 실제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손실보다 도덕적으로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8]. 그렇기에 여기서는 배아를 냉동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연구에서의 배아 파괴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단순히 배아를 냉동하는 것에 그쳐 윤리적 문제를 회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도덕적으로 합리적 숙고를 한 연구자가 배아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불임 부부에게 배아를 생식의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연구자가 받은 배아는 실제로는 생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불임에 성공한 부부가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아서 연구만을 위해 기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아를 연구자가 다시 불임 부부에게 주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 배아를 기증한 부부는 또 다른 부모 밑에서 자신의 자식이 태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는 또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기증 받은 배아를 다시 생식에 쓰는 것이 배아를 냉동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와 같이 연구자가 배아를 냉동하거나 생식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봤을 때 “혼합된 설명”은 분명 남은 배아 죽이기를 정당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합된 설명”에서는 제3자의 실제 행위에 따라, 그리고 연

구자가 합리적인 선택 사이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배아가 죽을 것이라 가정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V. “손실 없음의 원리”에 따른 만든 배아 연구의 정당성

여기서 “혼합된 설명”의 “손실 없음의 원리”는 만든 배아 죽이기 또한 정당화하는 것으로도 보일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배아를 사용하여 연구를 하려 했던 연구자가 그 연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는 다른 사람(다른 연구자)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이 사례에서도 연구자의 합리적인 선택 사이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연구 배아는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연구배아 또한 어차피 죽을 배아이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하여 파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혼합된 설명”의 “손실 없음의 원리”는 연구 배아에 있어서도 동일한 설명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무결한 원리로 확정할 수 없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손실 없음의 원리”는 남은 배아의 연구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배아의 연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없음의 원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연구 배아 죽이기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연구 배아의 죽음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많다면, 누군가는 연구만을 위한 곧 죽을 운명인 체외수정의 배아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무용하다. 전면적으로든 제한적으로든 줄기

12) 이에 대하여 배아를 냉동하는 것이 배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배아를 영원히 냉동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과연 배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구인회 또한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8]와 [12] 참조.

세포 연구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연구자들이 만든 배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훼손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손실 없음의 원리”가 남은 배아 죽이기를 정당화하지만 연구 배아 죽이기를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들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자. 아웃카는 “손실 없음의 원리”가 남은 배아 죽이기를 정당화하지만 연구 배아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이는 우리가 배아의 파괴에 처음부터 가담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손실 없음의 특징에 부합한다. 즉, 배아의 의도적인 파괴와 같이 혐오스러운 일은 처음부터 ‘우리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9].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고의적인 손실을 허용하는, “손실 없음의 원리”의 조건은 손실이 어떤 경우라도 발생할 수 있고 손실로부터 좋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손실 없음의 원리”에 아웃카가 설명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덧붙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첫째, 행위 당사자는 손실의 야기해서는 안 되고, 둘째,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야만 하며, 셋째, 애초에 손실을 포함하는 계획이어서는 안 된다[8].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추가된 세 가지 조건들이 남은 배아 죽이기는 정당화할 수 있지만 연구 배아 죽이기는 정당화할 수 없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자.

이 조건들은 연구자들이 남은 배아를 일부러 생산하고 폐기하려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즉

배아의 생산과 폐기가 연구자의 의도와 무관함을 드러낸다. 먼저 위의 “우리는 손실을 야기하는 상황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를 살펴보자. 사실상 남은 배아는 연구 이외의 목적, 즉 불임클리닉에서 만들어지고 버려진다. 더 이상 생식의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배아들이 남겨져 연구자들에게 기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배아의 생산과 폐기는 엄연히 연구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연구에서의 파괴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적 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해 남은 배아의 파괴는 허용하지만 과연 연구 배아의 파괴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일단 여기서 연구 배아를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배아의 생산과 폐기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연구자는 배아에 대한 연구가 배아를 죽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연구를 위해 만든 배아를 사용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이에 대해 갑자기 후회하고 연구하기를 포기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혼합된 설명”의 “손실 없음의 원리”로 연구 배아에 대한 연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 하에서 배아는 연구자의 합리적인 선택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관계없이(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든)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구 배아의 파괴도 허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는 조건 또한 검토해보자. 이는 연구자가 어떤 경우에도 배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애초에 남은 배아는 불임클리닉에서 생명의 탄생을 위한 축복받을 대상이었다. 그런데 단지 쓰고 남은 배아라고 해서 연구를 위해 파괴하는 것은 배아의 운명 자체를 슬프고 끔찍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린다. 그러나 연구 배아는 처음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이 목적 안에는 파괴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

되어 있으므로 배아의 운명 자체를 슬프고 끔찍하다는 개념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는 연구자 또한 그러한 배아의 파괴될 운명에 대해 슬프고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배아의 파괴가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배아의 파괴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연구 배아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당하지 않다.

이제 “우리의 계획에는 손실의 발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검토해보자. 남은 배아의 최초 목적은 불임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안에 배아의 훼손을 위한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손실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배아의 파괴는 허용될 수 있다. 반면 연구 배아의 경우에는 손실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연구를 위해 생산되었거나 다른 연구자로부터 기증받았던 간에 연구 배아는 애초부터 훼손을 전제한 연구에 쓰일 것임이 분명했다. 따라서 남은 배아의 파괴는 허용될 수 있고 연구 배아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점은 모든 연구자가 배아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배아를 계획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연구 배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에게서 배아를 기증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연구자가 연구 배아를 요청하여 연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애초에 배아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비껴갈 수 있다. 이러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손실 없음의 원리”가 주장하는 연구 배아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VI. 나가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실 없음의 원리”에 따른 남은 배아의 훼손은 정당화할 수 있어도 연구 배아의 훼손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손실 없음의 원리”가 남은 배아의 훼손을 지지하는 원리로 채택될 수 있고 이는 역설적으로 연구자의 배아 훼손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남은 배아 훼손의 정당화가 체외수정을 통한 잉여배아를 많이 생성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13].¹³⁾

그러나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현재 불임클리닉에서 시행되는 체외수정은 여성의 피해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의 배아를 만든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배아가 남게 되는 것이다. 즉 적은 양의 배아를 남겨 결국 적은 배아가 폐기되도록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미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과잉 배아를 생성하거나 동결시키지 않으면서 체외수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2016년 7월 국내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불임을 겪는 여성들의 배란을 유도하여 많은 난자를 채취하여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는 남은 배아 파괴를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배아를 당연히 파괴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연구자와 이를 수용하는 시민들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14].¹⁴⁾ 이로 미루어 볼 때 “손실 없음의 원리”가 말하는 연구 배아의 파괴가 남은 배아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

13) 이와 유사한 논증을 Lynn Gillam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태아조직의 사용이 잘못된 행위를 증가시킨다는 논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참고문헌[13] 참조.

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은 배아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 또한 배아를 더 많이 죽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8]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손실 없음의 원리”는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을 지지하기에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이 원리는 모두 다 허용하거나 모두 다 허용하지 못하는 약점을 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손실 없음의 원리”에 따른 배아 연구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그에 따른 주장과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배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세부적으로 다루기보다는¹⁵⁾ 배아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러한 배아 연구의 정당성 여부를 지지하는 원리에 국한하여 다루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고찰할 논거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통해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복지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7년 만에 승인... 뇌졸중 등 난치병 치료 목적. 중앙일보. 2016. 7. 11. Available from: <http://news.joins.com/article/20289073> [cited 2017 Mar 11]
- 2) 문성학, 정창록.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도덕성

논쟁. 철학논총 2010 ; 62(4) : 85-110.

- 3) Beauchamp TL, Childress JF. 박찬규, 최경석, 김수정 등 역.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 4) 마이클 샌델. 안진환, 김선욱 역. 정치와 도덕을 말한다. 서울 : 와이즈베리, 2016.
- 5) 뤼방 오지양. 최정수 역. 딜레마. 파주 : 다산초당, 2013.
- 6) National Advisory Bioethics Commission. Ethical Issue in Human Stem Cell Research. Maryland : Rockville, 1999.
- 7) Mummery C, Van de Stolpe A, Roelen B, et al. Stem Cells: Scientific Facts and Fiction. Oxford : Elsevier, 2014.
- 8) Devolder K. The Ethics of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9) Outka G. The ethics of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and the principle of nothing is lost. Yale J Health Policy Law Ethics 2009 ; 9 : 585-602.
- 10) Brock DW. Creating embryos for use in stem cell research. J Law Med Ethics 2010 ; 38 : 229-237.
- 11) 마이클 샌델. 강명신 역. 생명의 윤리를 말한다. 파주 : 동녘, 2012.
- 12) 구인회.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점들.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6 ; 9(1) : 16-27.
- 13) Gillam L. Arguing by analogy in the fetal tissue debate. Bioethics 1997 ; 11(5) : 397-412.
- 14) 구영모, 황상익. 생명복제 연구와 활용에 따른 몇 가지 윤리적 문제들.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0 ; 3(2) : 199-209.

14) 구영모, 황상익 또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인간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인간배아에 대한 산업적·상업적 이용은 물론 연구 목적의 실험도 자제하는 편이 윤리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참고문헌[14] 참고.

15) 물론 이러한 검토에서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논의임은 분명하다.

Ethical Issues in the Distinction between Discarded and Created Embryos: The Nothing Is Lost Principle

LEE Hyang Yeon*

Abstract

Stem cell research raises many ethical issues, including the possible harms that are done to early embryos in the process of deriving stem cells. There are two basic stances concer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ne supports the research and regards the destruction of embryos as an acceptable cost; the other rejects the research and foregoes the potential benefits that the research might offer. In this article, I examine each of these stances and consider a flexible middle-ground position. Additionally, I introduce the Nothing-is-Lost Principle as one element of this middle-ground position and examine whether or not it justifies the discarded-created distinction. I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d guidelin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stem cell research.

Keywords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biomedical research, human embryo, discarded embryo, created embryo, Nothing-Is-Lost Principle

* Department of Philosophy, College of Human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